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사업자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국명	
	상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개요	사업명				
	대상자원			개발방법	
	투자규모			투자비율	
	사업장소재지				
회사개요	①예상자본금(출자금)규모			②준립기간	
	③자원개발투자금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1부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사유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① ~ ③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경우만 기입합니다.